

후대교배종 옥수수 DAS-59122-7xNK603

1. 법적근거

-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2
-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」 제1-3조, 제3-2조

2. 후대교배종 위해성 심사현황

	모품종 1	모품종 2
Event 명	DAS-59122-7	NK603
특성		
심사완료일		

3. 심사결과

- 후대교배종 GM옥수수는 상호작용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가 필요 없음으로 결론